

●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101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6일
금융위원회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한국산업은행

2. 조건 변경

가. 2009.2.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2-1-1(증권 투자중개업)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

- 다. 2-1-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
 - (1) 채무증권, 지분증권(주권 제외), 파생결합증권(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) 및 증권예탁증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)의 모집·매출의 주선
 - (2) ~ (3) (생략)

나. 변경 내용

- 인가조건인 “(1) 채무증권, 지분증권(주권 제외), 파생결합증권(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) 및 증권예탁증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)의 모집·매출의 주선”을 “(1) 채무증권, 지분증권(주권 제외), 파생결합증권(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) 및 증권예탁증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)의 모집·사모·매출의 주선”으로 변경

- 인가조건 변경기간 및 업무대상은 다음과 같음

- 변경기간 : 변경일로부터 '25년 말까지('21.3.31.~'25.12.31.)
- 업무대상 :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·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·대주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

3. 변경일 : 2021. 3. 31.